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496
----------	-------

발의연월일 : 2026. 2. 2.

발 의 자 : 박홍배 · 박균택 · 박 정
윤종균 · 임오경 · 윤준병
김태선 · 이수진 · 진성준
이용우 · 박정현 · 민병덕
박희승 · 안호영 · 김남근
강준현 · 전진숙 · 모경중
복기왕 · 최혁진 · 김우영
의원(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충전시설의 위치, 규모 등의 설치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고,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등 이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충전요금이라는 총괄 가격 형태로만 제공하고 있어, 저공해자동차등의 이용자가 충전소에서 충전을 시작하기 전에 요금제 유형 등을 구분하여 확인하거나 비교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로 인해 이용자는 실제 적용될 충전요금을 사전에 예측하거나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충전요금의 범위에 단위가격 및 요금제 유형 등에 따라 구분

한 요금을 포함하도록 하여, 충전요금 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알권리 및 체감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10제2
항).

법률 제 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123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10제2항 중 “충전요금”을 “충전요금(단위가격 및 요금제 유형 등에 따라 구분한 요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전시설 이용정보 제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충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58조의10제2항에 따라 충전시설 이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1123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제58조의10(저공해자동차등 충전 시설의 전산망 등록 등) ① (생 략) ②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 을 운영하는 자는 사용자 편의 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충전시 설의 이용 상태, <u>충전요금</u>, 고 장 여부 등 이용정보를 제58조 제16항에 따른 전산망에 실시 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법률 제21123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제58조의10(저공해자동차등 충전 시설의 전산망 등록 등) ① (현 행과 같음) ② ----- ----- ----- -----<u>충전요금(단</u> <u>위가격 및 요금제 유형 등에</u> <u>따라 구분한 요금을 포함한다)</u> ----- ----- -----. ③ · ④ (현행과 같음)